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089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4월 7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 9. 25.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범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자본금 출자범위 개정 (안 제5조 개정)

- 서울특별시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1/2미만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신설·강화되는 사항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2.11. ~ 2016. 3. 2.)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범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하게 된 취지를 살펴보면,

출자·출연기관은 「민법」, 「상법」, 개별법률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한편,

채용비리 및 방만한 경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지적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

1) 이러한 개별법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산지출을 줄이고 인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 서울관광마케팅(주)는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자생력을 갖추고자 자본금 207억 7,100만원 중 48.14%인 100억원을 서울시가 출자하여 2008년 1월 29일 16개 민간주주가 함께 설립한 유일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출범하였음.

(단위 : 백만원)

계	서울시	시티드림(주)	롯데관광(주)	(주)서한사	우리은행	(주)코엑스	(주)하나투어	(주)대한항공
20,771	10,000	3,000	1,000	1,000	1,000	700	600	500
(100%)	(48.14%)	(14.44%)	(4.81%)	(4.81%)	(4.81%)	(3.37%)	(2.89%)	(2.41%)
(주)아시아나항공	(주)장림건축	중소기업은행	(주)HS애드	(주)사라	(주)호텔신라	씨제이앤씨티(주)	(주)리솜리조트	(사)서울시관광협회
500	500	500	300	286	286	200	200	200
(2.41%)	(2.41%)	(2.41%)	(1.44%)	(1.38%)	(1.38%)	(0.96%)	(0.96%)	(0.96%)

※ 설립당시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총자본금 1/2미만 출자

서울관광마케팅(주)는 200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서울시가 출자한 100억원의 자본금을 포함하여 총 207억원 중 47%(97억원)가 잠식된 상태로서,

서울관광마케팅(주)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7,100	16,900	27,900	17,400	11,300	13,500	15,136
당기순손실	2,089	1,831	732	1,492	1,976	851	500
누적순손실	2,089	3,920	4,652	6,145	8,217	9,067	9,566

이는 설립 이전 타당성 검토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카지노와 면세점 운영까지 계획했으나 법령 위반과 중앙정부 허가 미취득 등으로 카지노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2015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포기하기로 하는 등 연간 서울시 공익 목적의 수탁 사업에 80%이상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관광마케팅(주) 수주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서울시 대행	별도입찰 등
2015년	사업 수	31개	25개	6개
	계약금액	21,301	18,221	3,080
	매출비율	100.0%	85.54%	14.46%
2014년	사업 수	29개	21개	8개
	계약금액	17,530	14,661	2,869
	매출비율	100.0%	83.6%	16.4%
2013년	사업 수	29개	23개	6개
	계약금액	17,147	13,758	3,389
	매출비율	100.0%	80.2%	19.8%

또한 2015년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수탁사업은 2014년 대비 8.4%인 1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5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관광분야 전체 예산의 40.7%에 해당하며 설립 8년차인 2015년까지 80%가 넘는 서울시 대행사업 의존율을 보이는 것은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시하고자 하는 애초 주식회사 형태 설립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임.

서울관광마케팅(주) 수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관광분야 예산액	37,529	34,255	43,979
서울관광마케팅(주) 위탁 예산	15,271	14,093	13,219
서울관광마케팅(주) 위탁 비율	40.7%	41.1%	30.1%

서울관광마케팅(주)의 경우 설립 당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 하였으며,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제정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서울시 출자 비율은 단순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가 갖는 위상과 역할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향후 출자 비율 조정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삭제된 안 (2014.3.24. 삭제)	제정안 (2014.3.24. 공포)
<p>「지방공기업법」</p> <p>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u>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u>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u>를 말한다.</p>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역〉

조례 조항	현행 및 개정안 조문	수정안 조문
안제1조, 안제6조제7호	의한	따른
안제4조	기재하여야	적어야
안제8조	해태한	게을리한
안제10조, 안제11조	의한다	따른다